

의안번호	2215726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1. 14.
추 계 번호	25B736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벌칙) 제6호·제7호·제8호 삭제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삭제>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삭제>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삭제>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조합장 등에 대한 벌칙 삭제	의무규정
	안 제60조(과태료) 제1항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항) 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조합장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벌칙) 제6호·제7호·제8호 삭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60조(과태료) 제1항 신설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영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하여금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조합의 채권자가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조합원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1)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표 1]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수단

구 분	현행	개정안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 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 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조합장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수단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²⁾,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2)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